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8.7.24.)

일 반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준 옥]

목 차

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
2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2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8. 7.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8. 7. 17.

2.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현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

1. 제안이유

- 거창군의회 2014년 제2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거창군의회 2016년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매입 토지 면적이 1천㎡이상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바 있음
 -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공된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주변 잔여부지 추가 매입고자 함
- ※ 폐도부지 매입당시 계약서상(특약사항) 우선 매입 대상임.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사업위치 : 거창읍 정장리 493-2

○ 면 적 : 7,515m²

○ 매입비용 : 195,832천원 / 감정평가 금액

나. 취득재산 세부내용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매입	토지	거창읍 정장리 493-2	도로	7,515	49,599	한국도로공사

※ 기준가격 : 연접지 공시지가(6,600원/m²) × 면적(m²)

다. 추진경과

○ 2016. : 개인소유 5필지 2,415m² 매입 완료

○ 2017. : 한국도로공사 소유 14필지 15,946m² 매입 완료

○ 2018.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라. 향후계획

○ 2018. 7. : 예산 편성

○ 2018. 8. : 예산 편성후 매입(한국도로공사와 특약에 의한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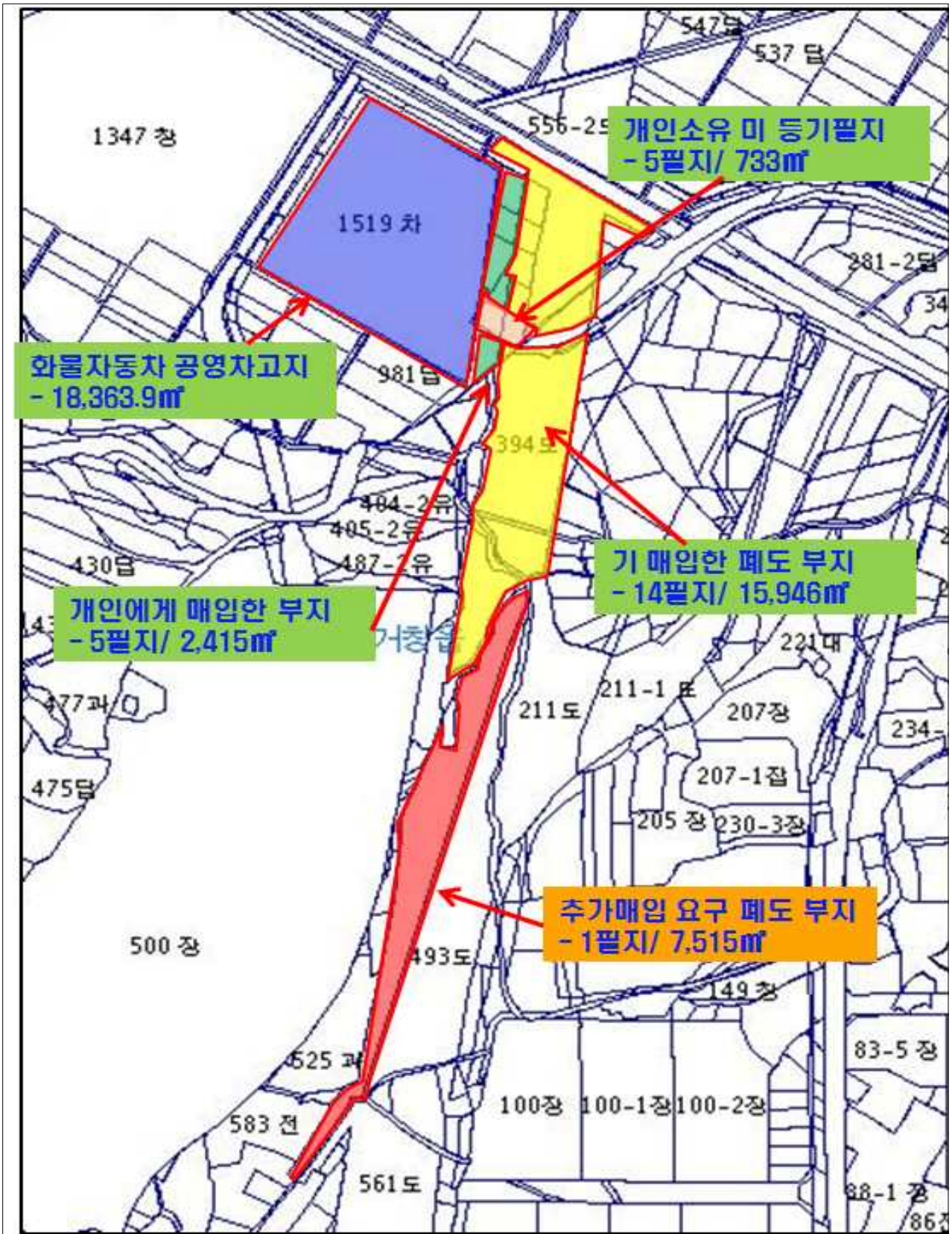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추가 잔여부지 매입으로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장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와 주차난 해소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가. 위치도



나. 지적도



4.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5. 검토의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 매입을 위해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개인 소유지 부지를 1차로 매입 하였고
- 그리고 2016.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구88고속도로 폐도 부지” 매입을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장 등에 활용하고자 2016. 5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 폐도 부지 중 광대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사용 중인 거창읍 정장리 493-2(7,515㎡) 폐도는 공사 완공 후 거창군에서 매입하는 특약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였으며
-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구88고속도로 폐도부지” 매입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매입하는게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외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7. 16.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7. 17.

2. 요구이유

- 거창군장애인장 민간위탁 포기(2018.2.26.)로 인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창군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 나. 위치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다. 시설규모

구분	부지	건물			정원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현황	6,612㎡	2,201㎡	1,200㎡	1,001㎡	7명	30명	

- 라. 사업내용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마. 위탁대상 사무

○ 운영

- 장애인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서비스 제공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 시설물 관리 : 장애인근로사업장 건축물, 기계설비, 차량, 물품 등

바. 위탁방법 : 공개모집

사.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아. 소요예산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79조(비용 부담)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관련법령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3호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운영신고 서류 및 위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기회 마련
- 사사회적응 및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장애인 근로사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7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8. 8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9월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예산조치

- 2018년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비 1차 추가경정 예산 반영

라.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가.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의 박스 단가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 왔다고 판단되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나. 현재도 법인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을 포기하여 잠정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라 많은 문제점이 우려됨

- 다.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의 수혜를 위해서는 근로사업장이 계속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재 가동하려면 부채에 대한 금액과 조치 계획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 라. 근로사업장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공증 등 법적인 조치가 필요 하다고 검토 되었음.

1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위탁운영 계획

❖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I 추진배경

- 장애인근로사업장 현 위탁법인의 수탁포기 : 2018. 2. 26.
- 현 법인과 위·수탁 협약 해지와 장애인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법인 모집 공고 등 절차 추진

II 현 황

-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일반산업길 160
- 위탁법인 : (사)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거창군지회(지회장 백승모)
- 운영기간 : 2016. 7. 14. ~ 2019. 6. 30.
 - 위탁포기 : 2018. 2. 26
- 생 산 품 : 종이포장재 일체(※ 거창향토브랜드 포장박스 생산)
- 시설현황

부지	건 물			종사자현황		비고
	계	공장	창고	종사자	근로자	
6,612㎡	2,201㎡	1,200㎡	1,001㎡	2명	7명	

※ 2012. 06. 27 부지매입 / 2013.05. 31 공장 준공

- 운영현황

구 분	수 주 실 적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5.5억원	9억원	12억원 9천	9억원	11.6억원
주력 생산품 (과수)	▷사과 : 3억 ▷포도 : 5천 ▷딸기 : 5천 ▷기타 : 1억5천	▷사과 : 3억5천 ▷포도 : 5천 ▷딸기 : 1억5천 ▷기타 : 3억5천	▷사과 : 4억5천 ▷포도 : 2억5천 ▷딸기 : 2억 ▷기타 : 3억 9천	▷사과 : 4억5천 ▷포도 : 2억 ▷딸기 : 2억 ▷기타 : 5천	▷사과 : 5억5천 ▷포도 : 2억 ▷딸기 : 2억 ▷기타 : 2억1천

※ 2013.07. 24 장애인근로사업장 개장

Ⅲ 추진계획

가. 운영법인 및 기간

- 운영방법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나. 추진일정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8. 7월(제233회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2018. 8월
 - 공개모집/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 결정(9명 이하)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9월
-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Ⅳ 기대효과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인의 자립능력배양 및 안정적인 소득보장, 일자리 창출

□ [참고자료] :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관계법령

가 시설의 종류 및 기능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3호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설치 및 운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제5조(위탁운영)

- ① 군수는 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그 하부기관을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라 운영신고 등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설치·운영시 구비서류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장애인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장애인복지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8. 7. 16.
-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8. 7. 17.

2. 요구이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 민간위탁
- 나. 사 업 량 : 휠체어택시 차량 2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 다. 위탁대상 사무
 - 휠체어택시 위탁운영(2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거동 불편자 이용예약 등 관리
-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 2017. 5. 16. ~

○ 위탁차량

차종	규격	차량번호	승차인원	연식	비고
중형승합	그랜드스타렉스	74우8590	7명	2011년	* 휠체어리프트
중형승합	그랜드스타렉스	79서1654	7명	2007년	장착

마. 운영계획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행

- 위탁기간 : 3년

- 위탁내용 : 휠체어택시(2대) 운영, 차량과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4. 관련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유

○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여 휠체어택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차량의 운행과 관리 등의 업무도 증가하는 추세임

○ 담당부서의 업무과중과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함

나. 향후일정

- 수탁기관 공고 : 2018. 7월 ~ 8월중
- 위탁 운영기간 : 3년

다.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 : 연간 54,000천원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6. 검토의견

- 가. 일반인들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택시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나 수혜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의견도 있음
- 나. 이와 유사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부르미 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3개군에서는 통합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 다.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위탁 기간이 상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 라. 휠체어택시 운영은 장애인 단체에 위탁하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혜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거창군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운영계획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 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제4조

2. 사업현황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승차인원	연 식	비 고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4우8590	7명	2011년	* 휠체어 리프트 장착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9서1654	7명	2007년	

- 위탁사업비 : 54,000천원 / 2018년

3. 그간의 추진사항

- 수탁기관 :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 2017.5.16. ~ / 당초 2017.5.16.~2018.6.30.까지 위탁계약 함
- 위탁차량 : 2대

4. 위탁조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 위·수탁 협약서에서 규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5. 수탁자격 :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6. 추진 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18.7월 ~ 8월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18. 8월중
-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8월중

나. 수탁기관 선정 기준

- 수탁기관의 적정성
- 차량운행의 전문성과 책임성
- 휠체어택시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등

다. 위탁범위

- 관내 교통약자인 장애인·거동불편 노인 등에게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 휠체어택시 유지·관리
- 휠체어택시 이용 홍보
- 기타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7. 소요예산 : 2018년 위탁사업비 54,000천원

8. 기대효과

-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사회활동 활성화
-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과 일자리 창출
-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복지정책과)

(제정) 2002.05.09 조례 제164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제4조 (운영)** ①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등 (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 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